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회)	

기초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계획 수립 시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수립한 연간조사계획과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, 행정제재 가중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민연금 확인조사 계획 및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(안 제15조 개정)

나. 행정제재 가중 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,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 적용 기간을 명확히 규정(안 별표 3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이때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단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조사·질문의 범위·시기 등) ①·② (생략)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조사·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·질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제15조(조사·질문의 범위·시기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하며, 이때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.
1. ~ 5. (생략) ④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
별표 3(과태료의 부과기준)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<u>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.</u>	별표 3(과태료의 부과기준) 1. 일반기준 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<신 설>	<u>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</u>

나. (생략) 다. (생략)	<u>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단,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</u> 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 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672